

보도 일시	2022. 5. 10.(화) 배포시점	배포 일시	2022. 5. 10.(화) 14:00
담당 부서	이용자정책국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윤정 (02-2110-1520)
		담당자	주무관 백승재 (02-2110-1528)

방통위, 「2022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심사 계획(안) 발표 - 사업 계획서 기재사항 축소, 접수제 폐지, 신청 제출서류 간소화(15부→10부) 등 심사 기준 완화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2022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심사 계획(안)」을 마련하여 총 3차례(5월, 8월, 11월)에 걸쳐 심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시행(22.4.20)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후 처음으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연간 등록접수 일정을 사전에 공표하여 사업자가 신청시기 선택, 접수 준비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차 접수기간은 5월 20일(금)부터 5월 27일(금)까지이다.

< '22년 연간등록 접수 일정(안) >

구 분	접수기간	사업자 설명회	비고
1차(5월)	5.20.(금) ~ 5.27.(금)	5.13.(금)	사업자 설명회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온라인 실시
2차(8월)	8.9.(화) ~ 8.17.(수)	7.26.(화)	
3차(11월)	11.8.(화) ~ 11.15.(화)	10.25.(화)	

※ 분기별 1회 실시예정이며, 1분기는 위치정보법 개정('22.4.) 등으로 미실시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등록 사업 계획서의 기재사항을 축소해 심사 기준을 완화하였고, 접수제 폐지로 등록요건 충족 여부만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사업 등록 신청 제출서류를 간소화(15부→10부)하는 등 사업자의 등록 부담을 경감하였다.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위치정보법 제5조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내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방통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 위치정보 :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 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측위(測位)된 것”(위치정보법 제2조)

등록에 대한 심사는 사업의 영업이익률 등을 평가하는 ‘재무구조의 건전성’ , 위치정보시스템의 주요 설비 내역 등을 평가하는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 위치정보 보호 계획 등을 평가하는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 계획의 적정성’ 등 총 3개 사항으로 되어 있다.

신청 법인은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며, 방통위는 모두 적합판정을 받은 법인에 대해 등록 대상 법인으로 선정한다.

등록신청서류 작성요령 등에 관한 설명회는 등록을 희망하는 법인들의 편의를 위해 “온-나라 PC영상회의 (<http://vc.on-nara.go.kr>)” 를 활용해 5월13일 비대면으로 실시한다.

등록 신청은 전자민원 홈페이지(<http://www.emsit.go.kr>)에서 가능(또는 서면)하며,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 붙임 1. 2022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심사 계획(안) 1부.
2. 개인위치정보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주요사항 1부.
3.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신청서류 작성요령 설명회 1부. 끝.



2022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심사 계획(안)

□ 개요

○ 등록접수일정

구분	접수기간	신청서류 등 설명회	비고
1차(5월)	5.20.(금) ~ 5.27.(금)	5.13.(금)	온라인설명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온라인 설명회 실시
2차(8월)	8.9.(화) ~ 8.17.(수)	7.26.(화)	
3차(11월)	11.8.(화) ~ 11.15.(화)	10.25.(화)	

- ※ 상기 일정은 변동 가능하며 매 차수마다 접수 관련 보도자료 확인 필요(방통위 홈페이지)
- ※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가 신청은 별도 기간 없이 상시 접수 가능

○ 접수방법 : 전자민원센터(<http://www.emsit.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후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등록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원본 1부, 사본 10부, 이동식저장매체 1벌)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심사절차 : 신청서 접수 → 임직원결격 여부 심사 → 자문위원회 구성 → 등록심사 → 등록여부 결정 → 등록증 교부(약 2개월 소요)

※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대상, 등록 절차 및 방법 등과 관련하여 위치정보지원센터 (02-588-0185, www.lbsc.kr)에서 상담·안내가 가능

○ 심사항목 : 재무, 위치정보사업 설비의 적정성, 위치정보 보호 계획 등 평가

구분	관련 규정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제5조, 제6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방통위 고시 제2022-05호)
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제7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6조, 제6조의2 •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방통위 고시 제2022-06호)

□ 방문·우편 접수처

-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전화 : 02-2110-1528

개인위치정보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주요사항

□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사업계획서 기재사항

○ 신청서류 : 등록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원본1부, 사본10부, 이동식저장매체 1벌)

○ 사업계획서 : 요약문 (25쪽 이내)과 본문으로 작성 (전체 200쪽 이내)

※ 방통위 고시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상의 [별표1] '등록 신청서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검색

- 본문은 법인요건(1권), 사업개요(2권), 시스템의 구성(3권),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계획(4권)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기재

- (법인요건) 법인의 명세 및 조직, 재무상태 등
- (사업개요) 제공하려는 사업의 내용 등
- (시스템의 구성) 소요설비, 시스템 체계 등
-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계획) 위치정보관리책임자지정, 위치 정보 보호를 위한 암호화 등

※ 위치정보시스템으로 클라우드 서버 이용 가능

○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세부심사기준

<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및 평가항목 >

세부심사기준	평가
1. 재무구조의 건전성	
가. 수익성(3점) : 총자산 영업이익률	적합/부적합
나. 안전성(3점) : 부채비율	
다. 성장성(2점) : 매출액 증가율	
<small>※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주요 재무지표 및 재무제표를 별첨 [양식3]에 의거 작성한 서류)로 대체 ※ 1.재무구조의 건전성 항목의 경우 총 8점 만점 중 4.8점 이상을 얻은 등록신청법인을 적합으로 판정함</small>	
2.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가. 위치정보시스템의 주요 설비 내역	적합/부적합
나. 위치정보시스템 운영체계의 적정성	"
다. 위치정보시스템 품질보증의 적정성	"
3. 위치정보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의 적정성	
가. 위치정보의 관리적 보호조치 계획의 적정성	

1)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적합/부적합
2)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등 각 단계별 접근 권한자 지정 및 권한의 제안 방안	"
3) 위치정보보호 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취급·관리 절차 및 지침	"
4) 위치정보 제공사실 등을 기록한 취급대장의 운영·관리 계획	"
5) 위치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정기적인 자체 검사 계획	"
나. 위치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계획의 적정성	
1)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식별 인증 및 절차	적합/부적합
2) 위치정보시스템에의 권한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방화벽 설치 등의 조치 계획	"
3)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사실의 전자적 자동 기록·보존장치의 운영 계획	"
4) 위치정보시스템의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계획	"
5) 위치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이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	"
6)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 조치(개인위치정보주체가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의 일시적 중지를 요구할 경우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 제공 조치나,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하는 경우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계획 등)	"

※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방통위 고시 2022-05호) [별표2] 참조

○ **판단기준** :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에서 모두 적합판정

□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사업계획서 기재사항

○ **신청서류** : 인가신청서 1부,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사업계획서 (원본1부, 사본10부, 이동식저장매체 1벌)

※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방통위 고시 2022-06호) [별표1]의 '인가신청서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 **사업계획서** : 요약문(30쪽 이내)과 본문으로 작성 (전체 200쪽 이내)

- 본문은 등록신청법인에 관한 기본사항(1권), 사업개요(2권), 시스템의 구성·운영(3권),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계획(4권)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기재

- (기본사항) 법인의 명세 및 조직, 재무상태 등
- (사업개요) 양수되는 사업의 세부 계획 등
- (시스템의 구성·운영계획) 소요설비, 시스템 체계 등
 - ※ 위치정보시스템으로 클라우드 서버 이용 가능
-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계획) 위치정보관리책임자지정,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암호화 등

o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

<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및 배점 >

심사사항	세부심사기준	점수
1.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 능력의 적정성 (300점)	가. 최근 3년간 재무지표의 건전성 나. 위치정보사업 관련 기술적 능력	100* 200
2. 개인위치정보주체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보호에 미치는 영향 (550점)	가. 위치정보의 관리적 보호조치 계획의 적정성 나. 위치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계획의 적정성	250 300
3.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의 효율성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 (150점)	가. 법 제29조에 따른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제공 및 경보발송 업무를 계속적으로 제공가능한지 여부	50
	나.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양도 등의 통지 계획의 수립 여부	50
	다.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 계획의 적정성	50
총점 : 1,000점		*계량 100점 비계량 900점

※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방통위 고시 2022-06호) [별표2] 참조

o 등록기준 : 총점 600점 이상(1,000점 만점 기준)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신청서류 작성요령 설명회

□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는 아래의 두 가지 방법으로 실시할 예정

○ 일시 : '22.5.13.(1차), 7.26.(2차), 10.25.(3차) / 14:00~

○ 장소 : 온라인 설명회(비대면)

※ 상기 일정은 변동 가능하며 매 차수마다 접수 관련 보도자료 확인 필요(방통위 홈페이지)

① 온-나라 PC영상회의

○ 홈페이지 접속 (<http://vc.on-nara.go.kr>) → 민간 공공기관 영상회의 클릭
→ 이름 및 코드 번호 입력

- 설명회 당일 오전까지 참석 수요를 제출*한 참석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입장을 위한 코드번호를 당일 영상회의 개설(13:45분) 후 개별 안내 예정

* 사업자명과 코드번호를 안내 받을 메일 주소를 위치정보지원센터(LBS@kcup.or.kr)로 제출



② 위치정보지원센터 (LBS@kcup.or.kr, 02-588-0185)

○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인가) 대상, 등록 절차 및 제출서류 작성 방법 등에 대해 연중 상담·안내 지원